

# 충청북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관한과징금징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0년 10월 17일
- 회부일자 : 2000년 10월 19일

3. 제안이유

- 법규를 위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는 과징금이 관계법령의 개정 및 행정규제 완화조치 등으로 과징금 처분대상이 현저히 감소됨에 따라
- 조례에 의한 지속적인 기금운용은 사업실적이 저조하고 실효성이 부진하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운용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충청북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관한과징금징수및운영조례 폐지

5. 검토의견

충청북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관한과징금징수및운영조례폐지안을 검토한바 관계 법령의 개정 및 행정규제 완화조치 등으로 과징금 처분

대상이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사업실적이 저조하고 사업의 실효성이 부진하여 지속적인 기금운용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